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2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폐기물분석전문기관 [] 지정 [] 변경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50일(변경 지정 10일)
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	
	분석책임자	전화번호	
	분석분야	일반(□),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□), 석면(□)	
	변경사항(내용)	변경 전	변경 후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19조의2제1항 []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

폐기물분석전문기관 [] 지정 []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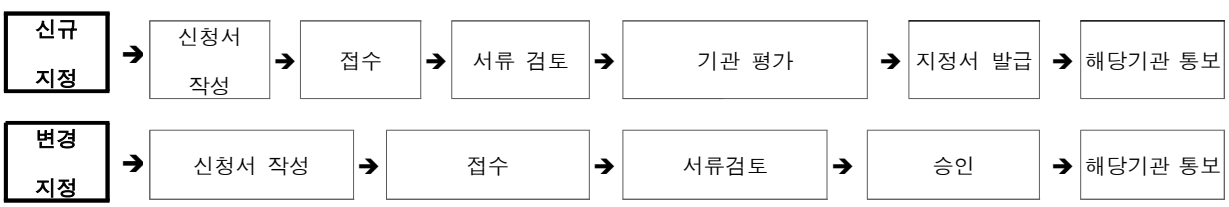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지정신청의 경우 가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나.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(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다. 폐기물 시험·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2.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.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나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.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